국가대표 선발 세부 기준 및 운영 내규

제　　정 1989. 5. 24.
개　　정 2004. 5. 14.
전부개정 2011. 1. 13.
개　　정 2011. 5. 13.
개　　정 2012. 1. 27.
개　　정 2013. 1. 11.
개　　정 2014. 1. 16.
개　　정 2014. 8. 21.
개　　정 2015. 11. 30.
개　　정 2016. 12. 1.
개　　정 2017. 5. 18.
개　　정 2018. 11. 13.
개　　정 2019. 2. 15.
개　　정 2019. 12. 26.
전부개정 2020. 10. 21.
개　　정 2021. 10. 8.
개　　정 2021. 12. 7.
개　　정 2022. 1. 27.
개　　정 2022. 12. 16.
개　　정 2023. 11. 23.
개　　정 2024. 1. 24.
개　　정 2024. 2. 20.
개　　정 2024. 6. 10.
개　　정 2024. 11. 11.
전부개정 2025. 2. 6.
전부개정 2025. 11. 19.
개　　정 2026. 1. 20.
개　　정 2026. 3. 3.

국가대표 선발 세부 기준 및 운영 내규

전부개정 2025.11.19., 개정 2026. 1. 20., 개정 2026. 3. 3.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본 내규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8조제2항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목적) ① 본 내규는 각급별 국가대표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또한 국가대표팀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강화훈련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대표 조기 양성을 위한 후보선수, 청소년 대표선수들과의 경쟁구조를 만들어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 국가대표 후보선수” 는 본 연맹에서 우수선수 조기 양성을 위해 선발하는 선수를 말한다.

② “청소년 대표선수” 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남녀 선수로 우수 주니어 선수 조기 양성을 위해 선발하는 선수를 말한다.

③ “꿈나무선수” 는 7세 이상, 11세 이하 남녀 선수로 우수 유소년 선수 조기 양성을 위해 선발하는 선수를 말한다.

④ “각급별 국가대표” 는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게 적용한다.

제2장 각급별 지도자 선발

제5조(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회 지침에 의해 재임용이 가능하거나 경기력향상위원 심의의결이 가능한 경우는 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기 및 역할) ①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는 신분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1년 이상의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한다.

②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제7조(국가대표 지도자 자격기준)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 기준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한다.

제8조(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청소년 대표선수 지도자 자격) ①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 대표선수 지도자, 트레이너는 본 연맹의 지도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국가대표 후보선수 지도자

가. 전임감독

1. 1급 대한스쿼시연맹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대표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체육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유급직장을 겸직하지 아니한 사람(무보수 명예직 제외)

나. 전문지도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스쿼시연맹 지도자 2급 이상 자격과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이 있는 사람
   나)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쿼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스쿼시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마)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스쿼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바)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스쿼시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청소년 대표선수 지도자

가. 전담지도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스쿼시연맹 지도자 1급 자격과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이 있는 사람
   나)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스쿼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전문지도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스쿼시연맹 지도자 2급 이상 자격과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이 있는 사람
   나)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쿼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이사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스쿼시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마) 스쿼시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스쿼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바)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스쿼시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트레이너

가. 트레이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나.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제3장 각급별 선수 선발

제9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세부 기준) ①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별지 제1호〉의 연간 대회출전 및 입상에 따른 선수별 포인트 획득 결과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법

1. 우선선발
2. 선발전 개최(순위별 선발)

③ 당해 연도 국가대표 선발 선수 수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승인 인원에 따른다.

④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차기년도 아시안게임 개최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해 선발방법, 인원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여 2개월 전에 공지한 후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국가대표 선수 우선 선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연도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우선 선발한다.

1. 당해 연도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아시안게임 개인전 1-4위 진입자
2. 당해 연도 세계남자프로랭킹 100위 이내, 세계여자 프로랭킹 50위 이내 진입자 (매년 10월 세계연맹 랭킹 기준)
3. 랭킹포인트 환산 대학, 일반부 통합 남녀 최상위 선수 각 1명 (동률 발생의 경우 상위등급 대회 포인트 우선 적용)
4. 1-3호에 해당하여 우선 선발자가 당해 연도 국가대표 엔트리 인원을 초과할 경우 리그전을 개최하여 순위별로 선발한다.
5. 3호에 해당한 우선 선발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자로 정한다.

제11조(선발전 개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위한 선발전 개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발전은 우선 선발 인원이 당해 연도 체육회 승인 엔트리에 부족한 경우 또는 파견 목적대회 성격에 따라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2. 국가대표 선발전은 매년 전국규모대회 및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정한다.
3. 국가대표 선발전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승인 인원을 기준으로 우선선발 선수를 제외한 인원을 선발한다.

제12조(선발전 참가자격)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남.녀 각 16명으로 한다.

1. 남.녀 각 연간 랭킹포인트 합산 2위-14위 13명(최상위 1명은 우선(자동)선발)
2. 남.녀 각 18세이하부 연간랭킹 포인트 합산 1위-3위 3명
3. 출전 유자격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부문 차순위자로 출전권을 부여하며 제10조와 관련하여 우선선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국가대표 선발전 경기 진행 및 선발인원)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 진행 및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자별 경기진행

일 정	경 기 진 행(남.녀 각)
1일차-2일차	16명 / 4개조 조별리그전
3일차	조별 1,2위 8명 토너먼트 조별 3,4위 8명 토너먼트
4일차-5일차	1,2위 토너먼트 승자 4명, 패자 4명 순위전 3,4위 토너먼트 승자 순위전

2. 경기진행 방식

가. 4개조 조별리그(랭킹별 시드부여)

A조	B조	C조	D조
2위	3위	4위	5위
9위	8위	7위	6위
10위	11위	12위	13위
18세이하부 3위	18세이하부 2위	18세이하부 1위	14위

조별 순위에 따라 8강 토너먼트 진출

나. 8강 토너먼트

조별 1,2위 토너먼트

A조 1위	VS	B조 2위
A조 2위	VS	B조 1위
C조 1위	VS	D조 2위
C조 2위	VS	D조 1위

조별 3,4위 토너먼트

A조 3위	VS	B조 4위
A조 4위	VS	B조 3위
C조 3위	VS	D조 4위
C조 4위	VS	D조 3위

다. 순위전

조별 1,2위 토너먼트 승자 4명 순위전(리그)

조별 1,2위 토너먼트 패자 4명 순위전(리그)

조별 3,4위 토너먼트 승자 4명 순위전(리그)

3. 국가대표 선발 인원은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 중 우선선발 인원을 제외한 체육회 승인 인원으로 한다.

4. 국가대표 선발전은 선수들의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1인 1일 최대 2게임으로 제한한다.

제14조(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 대표선수, 꿈나무 선수 선발)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 대표선수, 꿈나무 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체계적인 우수선수 조기 양성을 위해 매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청소년 대표선수, 꿈나무 선수를 선발한다.

② 국가대표 후보선수

가. 선발인원: 남녀 각 최대 5명을 기준한다.

나. 선발방법: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여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은 남녀 선수를 대상으로 순위별로 선발하여, 부상, 훈련참가 불가 등 결원을 대비하여 남.녀 각 2명을 예비 후보선수로 선발한다.

③ 청소년 대표선수 및 꿈나무 선수

가. 각 급별 선발인원

- 꿈나무 선수: 7세 이상 ~ 11세 이하(초5학년 이하) 남.녀 각 1명
- 청소년 대표선수
  - 12세(초6학년) 남.녀 각 1명
  - 13세 이상(중1학년 이상)~15세 이하(중3학년 이하) 남.녀 각 2명
  - 16세 이상(고1학년 이상)~18세 이하(고3학년 이하) 남.녀 각 2명

총 6명을 기준하되 부상, 훈련참가 불가 등 결원을 대비하여 각 급별 선발인원에 해당하는 수 만큼 예비 후보선수로 선발한다.

나. 선발방법

- 청소년 대표선수 및 꿈나무 선수 선발은 선발전을 진행하며, 당해 연도 해당 부문 연간 누적 랭킹에 따라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랭킹이 동률인 경우 상위등급 대회 포인트를 우선적용한다.
- 부문별 참가자<개정 2026. 3. 3.>

구 분		참가자
꿈나무	7세 이상 ~ 11세 이하	- 상위랭킹 4명
청소년대표	12세	- 남녀 12세부 상위랭킹 4명
	13세 이상 ~ 15세 이하	- 남녀 15세이하부 상위랭킹 4명 - 남녀 12세이하부에서 상위진학선수 중 12세 이하부 랭킹 1,2위(13세)에 해당하는 선수
	16세 이상 ~ 18세 이하	- 남녀 18세이하부 상위랭킹 4명 - 남녀 15세이하부에서 상위진학선수 중 15세 이하부 랭킹 1,2위(15세)에 해당하는 선수

- 경기진행 방식<개정 2026. 3. 3.>
  - 7세 이상 ~ 11세이하부 / 12세부 4명 풀리그전
  - 13세 이상 ~ 15세이하부 / 16세 이상 ~ 18세이하부 참가인원에 따라 풀리그전(랭킹별 시드부여)
- 선발인원

구 분	선발인원
7세 이상 ~ 11세이하부	풀리그전 남녀 각 1위
12세부	풀리그전 남녀 각 1위
13세 이상 ~ 15세이하부	풀리그전: 남녀 각 1,2위
16세 이상 ~ 18세이하부	풀리그전: 남녀 각 1,2위

- ‘가’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부문 선수들의 경기력이 월등하여 추가선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도 연령대별 선발인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 3분의 2의 의결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 해당 부분 참가인원 미달의 경우 선발전 경기진행 방식을 조절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청소년 복식 대표 선발

가. 아시아경기대회 복식대회 신설에 따라 우수 복식선수 양성을 위해 청소년 복식 대표를 선발한다.

나. 청소년 복식 대표선수 선발은 당해 연도 18세이하부 복식대회 성적을 반영하여 입상실적이 최상위인 선수로 남.녀 각 최대 4명까지 선발하되 당해 연도 선발에 관한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26. 3. 3.>

제4장 각급별 국가대표 운영 기준

제15조(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 ① 각급별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국가대표선발 및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한다.

②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는 우수선수 양성과 우리종목 활성화를 위해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연맹이 정하는 재능기부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③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가 성실하게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본 내규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상실, 교체, 징계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선수의 의무) ① 본 연맹의 각급별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임무는 국가대표선발 및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며, 본 연맹이 정하는 대표선수육성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감독 및 코치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선수 임의로 개인적인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

② 각급별 국가대표 선수는 우수선수 양성과 우리종목 활성화를 위해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연맹이 정하는 재능기부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③ 각급별 국가대표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에 불성실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보고되며, 각급별 국가대표 선수 자격상실, 교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훈련참가) ①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는 본 연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당해 연도 연간 강화훈련 일수에 따라 선수촌에 의무적으로 입촌하여 훈련에 필히 참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지도자와 선수, 꿈나무 선수는 본 연맹이 정하는 강화훈련 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8조(훈련기간) ① 국가대표 훈련기간은 체육회 훈련계획 및 연도별 훈련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의해 정한다.

②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대표 선수는 당해 연도 10월 전국체전이 종료 월까지 국가대표 자격이 유지되며, 11월-12월은 기존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참가를 원치 않을 경우 결원인원 만큼 후보선수, 청소년 대표선수 등으로 국가대표팀을 구성하여 강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청소년 대표선수 훈련기간은 체육회 승인기간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본 연맹 예산 규모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④ 단, 청소년 대표선수 및 꿈나무 선수는 본 연맹이 매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우수청소년 특별강화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제19조(훈련방법) ① 국가대표는 촌내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촌외에서 합숙, 합동, 소속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 소속지 훈련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을 초과할 경우 국가대표 훈련관리 규정에 따라 교체된다.

③ 국가대표 합숙 훈련의 일과는 체육회 강화훈련운영지침에 의하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가대표 후보선수와 청소년 대표선수 및 꿈나무 선수 훈련은 체육회 승인훈련, 국가대표합동훈련, 자체합숙 또는 합동훈련, 자체평가전 등으로 실시한다.

제20조(국가대표 선수 주요 국제대회 파견) ① 당해 연도 시니어 국제대회 파견은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를 파견한다.

② 당해 연도 시니어 국제대회 파견은 국가대표평가전 순위에 의하여 파견한다. 단, 국제대회 엔트리 제출일이 국가대표 평가전 이전일 경우 우선선발자는 국제대회 파견에 우선권을 가지며 차순위는 국가대표 선발전 순위에 따라 파견한다.

③ 국가대표 우선선발자가 파견 대회 엔트리를 초과한 경우 우선선발자 자체 평가전 순위에 따라 대회 엔트리를 기준하여 파견한다.

④ 개인전, 단체전, 복식경기 등의 참가부문이 구분되는 국제대회 참가시 해당부문 참가선수는 국가대표 평가전 순위에 따라 상위순위의 선수가 우선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훈련중 평가를 토대로 국가대표지도자와 선수간의 상의를 통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 국가대표 지도자가 추천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제21조(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 대표선수, 꿈나무 선수 국제대회 파견) ① 당해 연도 국제대회 중 일부 대회는 대회 성격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파견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파견하는 경우 자체평가전을 실시하여 순위에 따라 파견한다.

③ 당해 연도 주니어 국제대회 파견은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해당 연령대인 경우 우선 파견하여, 엔트리에 따라 청소년 대표선수, 꿈나무 선수를 파견한다.

④ 전항과 관련하여 국제주니어대회 개인전 연령대별 엔트리에 선수 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에 선발전을 실시하여 파견 선수를 충원한다.

⑤ 국제주니어대회 단체전 파견의 경우는 최고 전력 구성을 위해 별도로 선발전을 개최하여 순위에 따라 선수를 파견하되 선발전에 대한 운영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⑥ 당해 연도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각급별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가 한시적으로 각급별 대표선수로 선발된 경우 대회참가 기간에 한하여 자체 국가대표로 인정한다.

⑦ 국제주니어대회 파견을 위한 후보선수, 청소년 대표선수 및 꿈나무 선수는 자체평가전 등 경기력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대표 지도자가 추천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제22조(각급별 국가대표 선수 관리 및 교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는 각급별 국가대표로서 자격 상실되며 결원 인원 발생시 체육회 국가대표선발 규정 제8조 제6항에 의거 국가대표선발전 차순위 자로 교체한다.

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소속지 훈련, 국제대회 출전 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진천선수촌 입촌훈련이 불가하여 국가대표 자격을 상실한 선수

② 부상, 질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선수로서 치료 기간은 4주를 부여하며 4주 이상 치료 기간 필요시에는 교체 / 8주 이내에 완치된 경우 교체선수와 재경기 및 승패에 따라 복귀 여부 결정

③ 훈련 부적응에 의한 자진 사퇴 선수
④ 훈련 불성실 등으로 팀내 선수 및 훈련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한 선수
⑤ 소속지 훈련으로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선수
⑥ 각급별 국가대표 선수임무 및 훈련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선수
⑦ 국가대표 훈련관리규정 제9조②항에 해당하는 선수 등

제23조(각급별 국가대표 자체 평가전) ① 각급별 국가대표 정기평가전은 각급별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쟁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중 1~2회 실시한다.
② 각급별 국가대표 정기평가전은 원활한 국제대회 파견 및 참가부문별 경기력 향상 및 안정을 위하여 각급별 국가대표 훈련 시작에 맞춰 실시하며 세부적인 일정 및 운영사항은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와 협의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각급별 국가대표 수시 평가전은 정기평가전 이외에 경기력향상위원회 또는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정기평가전 이외의 기간에 각급별 국가대표 지도자와 협의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제기 처리절차) 각 급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계자로부터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관계자 이의제기 ► 경기력향상위원회 사전조사 ► 사안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소집 ► 처리결과 통보 ►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재심의 신청 ► 대한체육회 재심의 ► 심의 결과통보(최종)

부 칙 (2004. 5. 24.)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3.)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3.)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5.)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17.)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6.)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30.)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구)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11. 13.)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5.)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6.)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 및 운영 규정 전면개정에 따라 기존 우리연맹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일부를 내규로 별도 제정 운영하며 본 내규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0. 8.)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7.)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7.)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16.)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3.)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제15조와 관련하여 2024년 청소년대표 선정 인원은 한시적으로 30명 이내로 조정한다.

부 칙 (2024. 1. 24.)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0.)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0.)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11.)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6.)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각급별 선수 선발 규정은 2026년 각급별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11. 19.)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1. 20.)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3. 3.)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

대학, 일반부 포인트 적용 기준

① 대학·일반부 개인전 포인트

구분	국내대회			국내대회 백분률	국제대회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1위	400	200	100	100%	1000	900	800	700	500	400	200	100
2위	320	160	80	80%	950	850	750	560	400	320	160	80
3~4위	240	120	60	60%	900	750	700	420	300	240	120	60
5~8위	160	80	40	40%	800	500	400	280	200	160	80	40
9~16위	80	40	20	20%	500	300	200	140	100	80	40	20
17~32위	–	–	–	–	200	150	100	80	60	50	20	10
참가점수	30	20	10	–	50	40	30	–	–	–	–	–

② 대학·일반부 단체전 포인트

구 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전 국 체 전 전국규모대회 단체전
	파견 국제대회 / 시드 1,2번 100% 반영, 시드 3,4번 70% 반영		경기출전자 개인전 70% 반영 경기 미 출전자 개인전 30% 반영
1위	500	400	70(30)
2위	400	320	56(24)
3~4위	300	240	42(18)
5~8위	200	160	28(12)
9~16위	100	80	–
17~32위	60	50	–
참가점수	50	30	–

③ 대학, 일반부 대회 등급구분

구 분	국 내 대 회	국제대회
A 등급	코리아시니어오픈	세계 선수권대회 PSA WORLD TOUR PLATINUM
B 등급	전한국,대한체육회장배 전국학생선수권(대학부)	PSA WORLD TOUR
C 등급	회장배(전북) 전국실업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연맹 주최 전국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PSA CHALLENGER TOUR 30
D 등급	–	PSA CHALLENGER TOUR 20
E 등급	–	PSA CHALLENGER TOUR 10
F 등급	–	비치아시아 경기대회 PSA CHALLENGER TOUR 5
G 등급	PSA CHALLENGER TOUR 5 미만급 대회 PSA SATELLITE TOUR 5 / 16강 이상 시작 국가별오픈대회 11개국 이상 참가	PSA CHALLENGER TOUR 5 미만급 대회 PSA SATELLITE TOUR 5 / 16강 이상 시작 국가별오픈대회 6개국 이상 참가
H 등급	PSA SATELLITE TOUR 5 / 8강 이하 시작 국가별오픈대회 10개국 이하 참가–	PSA SATELLITE TOUR 5 / 8강 이하 시작 국가별오픈대회 5개국 이하 참가

④ 국내대회 대학부는 일반부 포인트의 70%만 적용한다.

⑤ 국내대회 B등급 대회 대학부는 전국학생선수권 대회를 포함하여 총 3개 대회 중 2개 대회 상위 포인트만 적용한다.

⑥ 국제대회(PSA 대회 포함) 참가포인트는 연간 최대 5개 대회에 한하며, 입상포인트는 연간 최대 3개 대회 최상위 성적만 적용한다. 단 모든 국제대회에 대한 포인트 부여는 국내선수권대회 최소 1회 출전을 한 경우에 한하며 참가 포인트는 입상 포인트를 받은 경우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는다.

⑦ 대학부, 일반부 개인전 국제대회 A,B,C 등급 참가점수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세계프로대회와 선발전을 거쳐 연맹이 파견한 대회에 한한다.

⑧ 연맹 파견 국제대회 순위별 포인트는 연간 최대 2개 대회 최상위 포인트만 적용한다.

⑨ 국내·국제대회 모두 출전 드로우(대진표)가 포인트 적용 등위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포인트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위 드로우 진입시 해당 포인트를 인정한다.(예 / 32강 시작 경우 16강 진입시 해당 포인트 인정)

⑩ 상기 기준 적용 대회 이외 당해 연도 특별사업으로 파견한 국제대회의 경우는 파견 이전에 등급 및 포인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지한다.

⑪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파견의 경우는 당해 연도 등록 대학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경우에 한하며, ④항에 기준하여 포인트를 부여한다.

⑫ 국제대회 참가 및 입상 가산점 부여 기준일은 연맹 파견 국제대회의 경우 1월 1일부터 국가대표 선발전 이전까지로 하며, 프로대회 등 기타 대회는 전년 11월 1일 –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하되 참가 및 입상 확인 증빙서를 제출한 대회로 한다.

⑬ 국제대회 참가 및 입상 가산점 부여는 대회 출전 최소 1일전 본 연맹에 사전 통보된 대회에 한하며, 참가 증빙서는 대회결과 및 대진표를 포함하여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 통보된 대회라 할지라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⑭ 포인트 환산 기준은 당해 연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적용시기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⑮ 당해 연도에 PSA에 등록하여 2회 이상 활동하거나 랭킹에 진입한 선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 가산점을 부여한다. (랭킹 기준일은 당해 연도 10월 31일자 기준)

구 분	남자 포인트	여자포인트
1위-50위	500	400
51위-80위	400	300
81위-100위	300	150
101위-150위	250	120
151위-200위	200	100
201위-250위	150	80
PSA 대회 D등급-H등급 대회 2회 이상 출전	30	30

⑯ 당해 연도 연간 랭킹 포인트 합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순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순위 : 상위등급 대회 입상자
- 2순위 : 동일 대회등급에서 입상실적 상위입상자
- 3순위 : 다수 대회 포인트 획득자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

7세 이상 ~ 11세이하부 · 12세부 · 15세이하부 · 18세이하부 포인트 적용 기준

[제목개정 2026. 3. 3]

① 7세 이상 ~ 11세이하부 · 12세부 · 15세이하부 · 18세이하부 개인전 포인트<개정 2026. 3. 3.>

구 분	국내대회			국내대회 백분률	국제대회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1위	400	200	100	100%	1000	900	800	700	500	400	300	100
2위	320	160	80	80%	950	850	750	560	400	320	240	80
3~4위	240	120	60	60%	900	750	700	420	300	240	180	60
5~8위	160	80	40	40%	800	500	400	280	200	160	120	40
9~16위	80	40	20	20%	500	300	200	140	100	80	60	20
17~32위	-	-	-	-	200	150	100	80	60	50	40	10
참가점수	30	20	10	-	60	50	40	30	20	15	10	10

② 7세 이상 ~ 11세이하부 · 12세부 · 15세이하부 · 18세이하부 단체전 포인트<개정 2026. 3. 3.>

구 분	세계주니어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아시아 주니어대회	유스게임 비치아시안게임	전국(소년)체전 전국규모대회 단체전
	파견 국제대회 / 시드 1,2번 100% 반영, 시드 3,4번 70% 반영				경기출전자 개인전 70% 반영 경기 미출전자 개인전 30% 반영
1위	1000	900	400	200	70(30)
2위	950	850	320	100	56(24)
3~4위	900	750	240	–	42(18)
5~8위	500	200	160	–	28(12)
9~16위	300	–	80	–	–
17~32위	100	–	50	–	–
참가점수	점수없음	점수없음	점수없음	점수없음	점수없음

③ 7세 이상 ~ 11세이하부 · 12세부 · 15세이하부 · 18세이하부 대회 등급구분<개정 2026. 3. 3.>

구 분	국 내 대 회	국제대회
A 등급	코리아시니어오픈	세계 선수권대회 PSA WORLD TOUR PLATINUM
B 등급	전한국,대한체육회장배 전국학생대회, 금곡배	PSA WORLD TOUR
C 등급	회장배(전북) 전국체육대회(고등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연맹 주최 전국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대회 PSA CHALLENGER TOUR 30
D 등급	–	PSA CHALLENGER TOUR 20 아시아주니어대회
E 등급	–	PSA CHALLENGER TOUR 10
F 등급	–	유스게임, 비치아시아경기대회 PSA CHALLENGER TOUR 5
G 등급	–	PSA CHALLENGER TOUR 5 미만급 대회 PSA SATELLITE TOUR 5 / 16강 이상 시작 국가별오픈대회 11개국 이상 참가
H 등급	–	PSA SATELLITE TOUR 5 / 8강 이하 시작 국가별오픈대회 10개국 이하 참가

④ 7세 이상 ~ 11세이하부 · 12세부 · 15세이하부 · 18세이하부 국내대회 포인트는 연간 최대 5개 대회 최상위 점수만 적용한다.<개정 2026. 3. 3.>

⑤ 국내대회 C 등급 대회 연맹 주최 전국 대회는 전국하계선수권대회는 제외한다.

⑥ 국제대회 참가점수는 연간 최대 5개 대회 최상위 포인트만 적용한다.

⑦ 7세 이상 ~ 11세이하부 · 12세부 · 15세이하부 · 18세이하부 개인전 국제대회 참가점수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세계프로대회와 국가별오픈대회에 한한다.<개정 2026. 3. 3.>

⑧ 연맹 파견 국제대회 순위별 포인트는 연간 최대 1개 대회 최상위 포인트만 적용한다.

⑨ 국내·국제대회 모두 출전 드로우(대진표)가 포인트 적용 등위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포인트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위 드로우 진입시 해당 포인트를 인정한다. (예 / 32강 시작 경우 16강 진입시 해당 포인트 인정)

⑩ 상기 기준 적용 대회 이외 당해 연도 특별사업으로 파견한 국제대회의 경우는 파견 이전에 등급 및 포인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지한다.

⑪ 국제대회 입상 가산점 부여 기준일은 연맹 파견 국제대회의 경우 1월 1일부터 국가대표 선발전 이전까지로 하며, 프로대회 등 기타 대회는 전년 11월 1일 –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하되 참가 및 입상 확인 증빙서를 제출한 대회로 한다.

⑫ 국제대회 참가 및 입상 포인트 부여는 대회 출전 최소 1일전 본 연맹에 사전 통보된 대회에 한하며(국제오픈 주니어 대회 출전시 서면상으로 연맹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사전 통보로 인정), 참가증빙서는 대회결과 및 대진표를 포함하여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 통보된 대회라 할지라도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⑬ 포인트 환산 기준은 당해 연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적용시기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⑭ 당해 연도에 PSA에 등록하여 2회 이상 활동하거나 랭킹에 진입한 선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 가산점을 부여한다. (랭킹 기준일은 당해 연도 10월 31일자 기준)

구 분	남자선수	여자선수
1위–50위	500	400
51위–80위	400	300
81위–100위	300	150
101위–150위	250	120
151위–200위	200	100
201위–250위	150	80
250위–300위	100	60
PSA 2회 이상 출전	50	50

⑮ 일반부 또는 대학부 선수중 국제 대회 주니어 참가 자격을 동시에 갖은 선수는 이중으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일반부 또는 대학부 점수만 부여한다. 단 본 연맹에서 파견한 주니어 대회 입상자(1–3위)에 한하여 15세이하부·18세이하부 국제대회 H등급 포인트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⑯ 당해 연도 연간 랭킹 포인트 합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순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순위 : 상위등급 대회 입상자
- 2순위 : 동일 대회등급에서 입상실적 상위입상자
- 3순위 : 다수 대회 포인트 획득자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